

Deloitte.

세무 및 관세 뉴스

2024년 1월



주목할 만한 사항:

법인소득세 ("CIT")

- 2014년 이전에 설립되었으나 아직 운영을 시작하거나 매출을 창출하지 않은 투자 프로젝트는 제218/2013/ND-CP호 시행령에 따른 CIT 인센티브를 적용 가능함
- Que Vo 확장공단 ("IZ")에 위치하며 Bac Ninh 도시에 일부의 토지면적을 가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CIT 인센티브
- 징수된 수입 관세 및 환경 보호세는 CIT 계산 시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처리됨
- 업체는 법인세를 별도로 신고하는 지점해 무이자 또는 시장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하는 경우 세금 부과 될 수 있음
- 분기별 CIT 잠정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 납부한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될 수 있음

간접세 ("VAT")

- 2024년 6월 30일까지 VAT 10%에서 8%로 감면 계속적용

개인소득세 ("PIT")

- 외국인 주재원이 해외에서 의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베트남 PIT 계산법
- 2024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근로자 채용 예정인 직책에 대하여 베트남 근로자 채용공고 절차 안내 (외국인 노동허가 신청에 신규프로세스)
- 규정기한 이후 PIT 확정 신고서류를 제출하는 개인에 대한 처벌

외국인계약자세 ("FCWT")

- 보세창고 내 가공품 판매에 대한 FCWT
- 한국에 입찰 서비스로 인한 소득에 대한 FCWT

무역 & 관세

- 무역구제 조치 적용 면제 규정 개정
- 내국 수출입 거래 현황 업데이트
- 보세창고로 수출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C/O") 발급
- 일부 ASEAN 회원국의 웹사이트에서 C/O form D의 온라인 인증이 허용함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에 따른 원산지 자체 인증의 적용일정
- 건설을 위해 수출가공기업 ("EPE")으로 전달되는 국내시장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

이전가격

- 세무총국의 요청에 따라 이전가격 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해 2024년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함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Transfer Pricing
Firm of the Year

Tax Firm
of the Year



법인 소득세 ("CIT") 지침 문서

2014년 이전에 설립되었으나 아직 운영을 시작하거나 매출을 창출하지 않은 투자 프로젝트는 제218/2013/ND-CP호 시행령에 따른 CIT 인센티브를 적용 가능함

2007년 투자허가서 ("IRC")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아직 운영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매출을 창출하지 않았으며 2014년 1월 1일 이후 수정 IRC를 받은 경우 제218/2013/ND-CP호 시행령의 15조 및 16조에 따른 CIT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 적용받은 시점은 회사가 소득을 창출한 연도부터 결정된다.

또한, 세무총국은 투자 프로젝트의 등록된 투자 활동과 관련이 없는 창고 임대, 철강과 원자재 거래등 상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CIT 인센티브를 적용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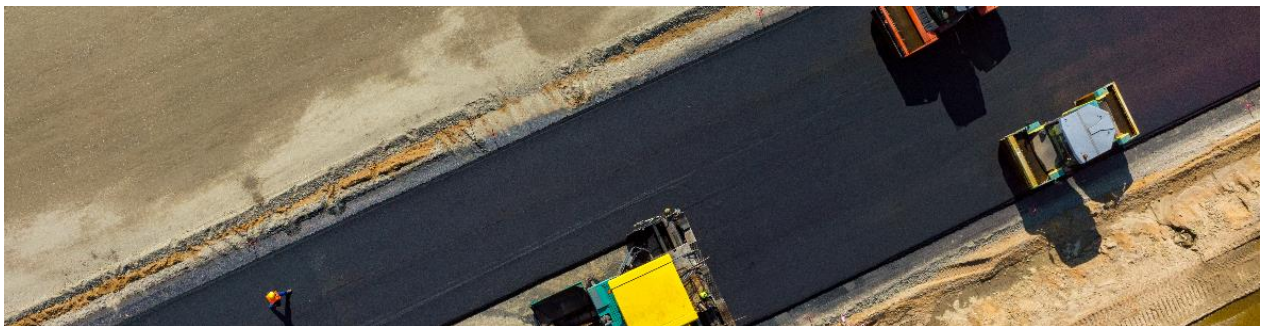
(세무총국의 2024년 1월 10일 제116/TCT-CS호 OL)

Que Vo 확장공단 ("IZ")에 위치하며 Bac Ninh 도시에 일부의 토지면적을 가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CIT 인센티브

Que Vo 확장공장에서 투자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투자허가서 ("IRC")를 받은 투자프로젝트는 제1급 도시인 Bac Ninh 도시에 일부의 토지면적을 가진 경우 CIT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Bac Ninh 이 제 1 급 지방 도시로 인정되기전) 최초 IRC에 등록된 투자 자본 및 용량규모내에 투자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한 소득의 경우: 규정조건을 여전히 충족하면 잔여 우대기간동안 IZ내에 신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Que Vo 확장공단이 공단설립에 대한 법규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Bac Ninh 도시가 제1급 지방도시로 인정된 날짜 이후에 IRC에 추가된 거래활동, 서비스제공 및 상품생산으로 인해 발생된 소득의 경우 IZ내에 신규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CIT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

(세무총국의 2023년 12월 19일 제5790/TCT-CS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법인 소득세 (“CIT”) 지침 문서

징수된 수입 관세 및 환경 보호세는 CIT 계산 시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처리됨

세관당국의 결정에 따라 징수된 수입관세 및 환경 보호세 (사기 또는 탈세에 대한 처벌 대상이 아님)는 손금불산입 항목에 제외된다.

(세무총국의 2023년 12월 20일 제5824/TCT-CS 호 OL)

업체는 법인세를 별도로 신고하는 지점에 무이자 또는 시장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하는 경우 세금 부과될 수 있음

금융기관법에 따라 활동을 하지 않은 기업은 다른 단체에 (기업의 CIT 별도로 신고하는 지점 포함) 무이자 또는 시장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을 주는 경우 조세관리법 규정에 따라 세금부과될 경우에 해당한다.

(세무총국의 2023년 8월 25일 제3782/TCT-CS 호 OL)

분기별 CIT 잠정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 납부한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될 수 있음

세무총국은 행정위반 결정서상 분기별 CIT 잠정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 납부한 행위에 대한 연체이자 계산과 관련하여 지방 세무국에 답변했다.

- 납세자는 분기별 CIT 신고할 의무가 없으므로 제 125/2020/ND-CP 호 시행령의 6항에 의한 규정에 따라 세금과소신고 행위에 대한 행정 처벌을 받지 않는다.
- 세무총국은 지방 세무국에게 세금조사/감사에 대한 법규정 및 지침문서를 근거하여 CIT 잠정 부족 납부한 행위에 대하여 과소 납부세금, 연체이자를 확정하여 징수하도록 요청한다.

(세무총국의 2024년 1월 17일 제 230/TCT-KK 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간접세 (“VAT”) 지침 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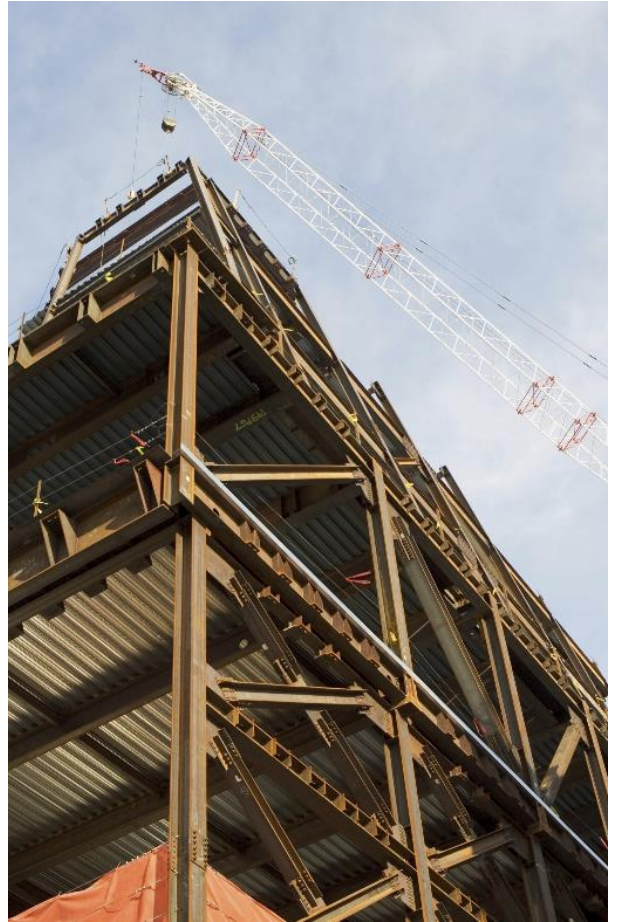
2024년 6월 30일까지 VAT 10%에서 8%로 감면 계속적용

2023년 12월 28일, 정부는 2024년 VAT 감면 적용에 관한 제94/2023/ND-CP호 시행령을 발표했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판매된 VAT 10% VAT 대상인 상품 및 서비스에 적용한다.

이 시행령에 따라 VAT 감면 대상이 아닌 상품 및 서비스는 이 시행령의 부록 I-III에 명시된다.

기업은 VAT 신고서와 함께 이 시행령의 부록 IV의 제01호 양식에 따라 VAT 감면 상품 및 서비스를 신고해야 한다.

(정부의 2023년 12월 29일 제 94/2023/ND-CP 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개인 소득세 ("PIT") 지침 문서

외국인 주재원이 해외에서 의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베트남 PIT 계산법

외국인 근로자가 내부 파견 형태로 해외 회사에 의해 베트남에서 일하도록 배정되며 베트남 회사와 해외 회사한테서 근로소득을 받는다. 그중에 해외 회사에 의해 지급된 부분 (해외 의무적인 보험료 포함)은 베트남 회사가 해외 회사에 전액 상환하는 경우 해외에서 납부된 보험료는 베트남에서 PIT를 계산할 때 공제될 수 없다.

(세무총국의 2023년 12월 29일 제 6002/TCT-DNNCN 호 OL)

2024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근로자 채용 예정인 직책에 대하여 베트남 근로자 채용공고 절차 안내 (외국인 노동허가 신청에 신규프로세스)

호치민시 고용 서비스 센터 (이하 "센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근로자 채용 예정인 직책에 대하여 베트남 근로자 채용공고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한다:

-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웹사이트에 채용 공고를 게시하고 채용과 관련 서명날인된 공식 문서를 같이 첨부한다.
<https://vieclamhcm.com.vn>
<https://vieclamhcm.net>
- 센터는 같은 날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시간 중) 기업의 채용공고서류를 접수하고 승인한다.
- 센터는 채용공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업체의 요건에 맞는 일자리를 희망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채용공고를 심사, 자문 및 소개한다.
- 센터는 고용주와 협력하여 채용 필요한 직책에 적합한 지원자를 자문하고 추천한다. 고용주는 소개된 지원자의 면접 결과를 센터에 회신해야 한다.

(노동부의 2023년 12월 25일 제 6932/TTDVVL-GTVL 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개인 소득세 (“PIT”) 지침 문서

규정기한 이후 PIT 확정 신고서류를 제출하는 개인에 대한 처벌

중개 수수료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소득 지급자가 PIT 10%를 원천징수했어도 여전히 직접 PIT 확정신고 대상일 경우 PIT 확정신고서류를 제출하고 PIT 잔액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기한내에 PIT 확정신고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개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 세무국이 기한일로 부터 90일이내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행정위반 기록서를 발행하기 전에 납세자가 PIT 확정신고 서류를 제출했고 세금연체이자 (있는 경우)를 납부했을 경우, 납세자가 제 125/2020/ND-CP 호 시행령, 제 13.5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세금신고기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 처벌을 받을 것이다.
- 세무국은 납세자가 세금확정신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일로 부터 90일이 지난후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여 납부 세액이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위반 기록서를 발행했을 경우 납세자가 제 125/2020/ND-CP의 제 17조 1항 a점에 따라 탈세에 대한 행정처벌을 받을 것이다. 또는 2015 형법 제 200조에 규정된 행정 위반이 탈세의 징후가 있을 경우 세무국은 규정에 따라 형사 소송을 진행하기위해 해당 케이스를 관할당국에 이전할 책임이 있다.

(세무총국의 2023년 12월 21일 제 5852/TCT-PC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외국인계약사제 (“FCWT”) 지침 문서

보세창고 내 가공품 판매에 대한 FCWT

베트남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 기업은 베트남 보세창고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여 소득을 얻을 경우 FCWT가 과세된다. 이는 상품이 원래 국내에서 수입되거나 다른기업에 의해 가공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외관 창고로부터의 배달 활동은 국제 운송, 환송, 보관 또는 다른 기업의 가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활동이 아니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3년 10월 10일 제/23679/CTBDU-TTHT 호 OL)

한국에 입찰 서비스로 인한 소득에 대한 FCWT

회사가 한국에서 입찰서류 및 법적절차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에 컨설팅 회사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베트남영토밖에 제공 및 소비되는 상기 법률 컨설팅 서비스로 인한 소득은 FCWT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Long An 세무국의 2023년 11월 10일 제/4436/CTLAN-TTHT 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무역구제 조치 적용 면제 규정 개정

산업통상부는 무역 보호 조치에 관한 여러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제 42/2023/TT-BCT 호 시행규칙의 일부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28년 12월 2023일자 제37/2019/TT-BCT호 시행규칙을 발행했다. 구체적으로:

-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건의 "이해관계자"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승인 또는 비승인 기간을 제한함
- 면제심사 대상 물품, 비면제 물품, 무역구제 조치 적용 면제결정이 취소될 경우를 추가
- 무역구제 조치 적용 면제기간 및 신청 마감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 및 보완
- 면제가 적용된 상품의 수입 및 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 및 무역구제 조치 적용 면제된 조직, 개인의 조건준수, 면제를 규정함
- 무역구제 조치 적용 면제 범위내에 일부의 경우를 폐지함

제 42/2023/TT-BCT 호 시행규칙은 2024년 2월 16일부터 유효된다.

(산업통상부의 2023년 12월 28일 제42/2023/TT-BCT호 시행 규칙)

내국 수출입 거래 현황 업데이트

기획투자부의 의견에 따르면 재무부의 제 08/2015/NDH-CP호 시행령 제 35조 1항 c점을 폐지하자는 제안은 외국인 기업의 현금흐름, 제조비용 증가, 경쟁력 및 투자계획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실행과정에 법적빈틈을 발생하게 될 수 있다. 기획투자부는 재무부에게 관련 규정을 통일적으로 개정하고 대체 솔루션의 장단점을 재평가하도록 제안한다.

(기획투자부의 2023년 12월 4일 제10107/BKHDT-TCTT호 OL)

산업통상부는 외국상인의 베트남내 활동과 관련하여 관세 총국의 제 4698/TCHQ-GSQL 호 OL에 대한 의견을 회신했다. 따라서 베트남에 상업적 존재가 없으며 베트남에서 물품을 거래하는 외국 상인은 수출권, 수입권 범위 내에서만 수행할 수 있고 수출권, 수입권 등록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부의 2023년 12월 7일 제8739/BCT-XNK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보세창고로 수출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C/O") 발급

수출입국은 보세창고로 수출된 물품에 대한 C/O 발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

- **국내에서 생산된 후 보세창고로 수출된 물품의 경우:** 수령자가 외국 상인이고 상품은 베트남이 서명하고 참여한 자유 무역 협정 ("FTA") 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C/O 발행이 고려된다.
- **FTA 회원국 원산지 상품이 보세창고로 수출된 후 다른 국가로 재수출되는 경우:** 외국 상인은 베트남 대표자가 승인 계약에 따라 연결 C/O (Back-to-Back C/O) 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위임범위와 위임기간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발행된 연결 C/O의 Box 1에 기재된 수출자와 첫 번째 수출국에서 발행된 C/O의 Box 2에 기재된 수입자는 회원국가에 본사를 가진 법인이어야 한다.

(산업통상부 수출입국의 2023년 11월 28일 제1000/XNK-XXHH호 OL)

일부 ASEAN 회원국의 웹사이트에서 C/O form D의 온라인 인증이 허용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을 포함한 일부의 ASEAN 회원국은 정보를 조회, 검증 목적으로 C/O Form D 발행을 담당하는 관할당국의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하였다. 특히, 수입자는 이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관할 당국이 발행한 C/O에 인쇄된 QR 코드를 사용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23년 8월 1일까지 위 국가에서는 HS 명명법 2022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별 규정 목록("PSR"), 직물 및 의류 목록, 정보 기술 상품 목록을 완전히 시행했다.

(관세총국의 2023년 12월 11일 제6359/TCHQ-GSQL호 OL)

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에 따른 원산지 자체 인증의 적용일정

CPTPP 협정에 따라 베트남은 CPTPP가 발효된 날 (2024년 1월 14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원산지 자체 인증 제도를 채택할 예정이다.

재무부는 산업통상부에 협정의 이런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법적 문서를 개발하도록 요청하는 제 9130/BTC-TCHQ호 OL를 발송했다.

(관세총국의 2023년 12월 28일 제6712/TCHQ-GSQL호 OL)

건설을 위해 수출 가공 기업 ("EPE")으로 전달되는 국내 시장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

건설을 위해 국내 시장에서 EPE로 물품을 전달하는 절차에 대한 관세총국의 지침은 아래와 같다:

- **통관 절차:** 국내 시장에서 EPE로 전달되는 물품이 **장비 또는 원자재**로 분류되는 경우 통관 절차 수행 여부 선택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다. 따라서 기업은 장비와 원자재를 국내시장에서 EPE로 전달할 때 해당 통관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 **세율 0% 적용, VAT 공제 및 환급 조건:** EPE의 공장, 사무실 건설 및 장비 설치를 위해 국내 시장에서 비관세구역으로 전달되는 물품에 대한 세율 0%, VAT 공제 및 환급 조건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관세총국은 세무총국에게 상기 경우에 세율0%의 적용조건에 대한 서면 지침을 발행하도록 요청한다.

(관세총국의 2023년 12월 18일 제 6529/TCHQ-GSQL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이전가격 ("TP") 지침 문서

세무총국의 요청에 따라 이전가격 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해 2024년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함

2023년 12월 13일 세무총국 ("GDT")은 2024년 특수관계자 거래를 발생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에 관한 제5654호/TCT-TKT호 OL를 발행했다. GDT의 요청에 따라 2024년에 지방 세무국은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고 이전가격 ("TP") 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 특수관계자 거래가 발생한 기업의 생산영업활동 분석 및 세금신고서류 검토를 강화함;
- 문 분석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TP위험이 높은 기업을 식별함; TP 위험징후가 있는 기업을 식별하기 위해 영업 업종, 투자 현황, 신고 현황, 특수관계자 거래 가격 조정에 대하여 여러 출처의 정보를 검토하고 종합함;
- 따라서 TP 위험이 있는 기업이 다음과 같습니다: 큰 금액 또는 큰 비중으로 특수관계자와 매출 및 비용거래를 발생하는 기업; 수 년동안 큰 손실을 계속 신고하지만 생산영업 규모를 확장하는 기업; 증가하는 매출이 있지만 국가에 낮은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

- 세무국은 2024년 세무조사 계획에 TP위험이 높은 납세자를 추가하고 TP 조사/감사계획으로 명확하게 분류하도록 한다.
- 동시에 세무국은 세무관리를 위해 지역의 유관 부처 및 당국과 협력하여 특수관계자 거래가 발생하는 기업, 특히 지역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데이터와 정보의 교환 및 수집을 강화함.

(세무총국의 2023년 12월 13일 제5654/TCT-TTKT호 OL)

딜로이트의 권고사항

상기 조사동향에 대한 저희의 관찰에 따르면, 기업은 이전가격 조사를 받기 전에 규정 준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TP 서류의 타임라인 및 품질에 초점을 맞출 뿐 만 아니라 TP 보고서와 관련 지원서류를 적극적으로 자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8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 105 0023
ngavu@deloitte.com



Tat Hong Quan
Tax Partner
+84 28 7101 4341
quantat@deloitte.com



Vu Thu Ha
Tax Partner
+84 24 710 50024
hatvu@deloitte.com



Dang Mai Kim Ngan
Tax Partner
+84 28 710 14351
ngandang@deloitte.com



손원식 회계사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이상근 회계사
+84 901 197 014
keunslee@deloitte.com



Bob Fletcher
Director, Trade and Customs
+84 28 7101 4398
fletcherbob@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